

# 학생복지위원회 규정

제정 1997.01.03.

개정 2004.11.01.

개정 2009.02.06.

개정 2012.07.02.

**제1조(명칭)** 본 위원회는 순천제일대학 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라 한다.

**제2조(목적)** 본 위원회는 학교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학생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구성)** ① 본 위원회는 총장, 기획처장, 입학관리처장, 학사운영처장, 산학협력처(단)장, 행정지원처장, 도서관장, 평생교육원장 등으로 구성한다.  
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사운영처장이 된다.

**제4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.

**제5조(소집 및 심의)** ① 본 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, 의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 이외의 인사에게 임석 발언을 허락할 수 있다.  
②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 
1. 복지시설 확장 및 축소에 관한 사항.  
2. 복지시설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.  
3.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6조(회의)**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  
② 회의는 재석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.(단,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)

**제7조(간사)** ① 본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.  
② 간사는 학생복지업무 주무 팀장이 된다.

**제8조(회의록)**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.  
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이 서명한 명단을 첨부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.